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6. 2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6월 7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1. 6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권희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상위 조례 및 지침과 상이한 내용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
○ 조문 정비 및 신설(안 제2조)

○ 조문 정비 및 별표 1, 2 삭제(안 제2조의2, 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○ 본 안건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상위 조례 및 지침과 상이한 내용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은

- 조례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
- 안 제2조에서 정의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2조의2에서는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, 위치를 명시한 별표1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을 명시한 조문을 정비하여 별표2를 삭제하였음

○ 본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등 상위법령과 관련 지침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5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6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상위 조례 및 지침과 상이한 내용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
나. 조문 정비 및 신설(안 제2조)

다. 조문 정비 및 별표 1, 2 삭제(안 제2조의2, 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1. 4. 22. ~ 5. 12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복지 관련 시설,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”을 “설치·운영하는 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재계약”이란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제2조의2 중 “별표 1과 같다”를 “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 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”을 “시행규칙 제21조제2항”으로, “선정 시”를 “선정 및 재계약시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3항”을 “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, 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</u> <u>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</u> <u>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사회복지시설”이란 「사회 복지사업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사 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<u>설치하거나</u> <u>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</u> <u>임차하여 운영하는 노인·장</u> <u>애인·여성·아동복지 관련</u> <u>시설,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</u> <u>노숙인 보호시설</u> 등을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2조의2(설치 등) 이 조례에 따</p>	<p>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 <u>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</u> <u>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·운영하</u> <u>는 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“재계약”이란 위탁 운영 중인</u> <u>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</u> <u>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</u> <u>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제2조의2(설치 등) -----</p>

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시설의 위탁) ① (생략)

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,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.

③ 위탁계약기간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위탁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<신설>

-----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

제4조(시설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

④ (생략)

제5조(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) ①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
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
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“선
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수탁
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
를 거쳐야 한다.

② ~ ⑦ (생략)

제11조(위탁의 해지) ① 구청장은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
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
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
만료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
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5조(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) ①
시행규칙 제21조제2항-----

-- 선정 및 재계약시 -----
-----.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위탁의 해지) ① -----
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